문서번호	공사감독1처-2391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7.04.19.
공개여부	공개

★차장	팀장	공사감독1처장	시설안전본부장	
협 조	공사감독2처장			
	공사감독3처장			

2017년 공사감독처 여름철 종합대책

2017. 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공사감독1처

2017년 공사감독처 여름철 종합대책

여름철 발생하는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감독처 건설공사장 내 각종 기상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2017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여름철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음.

✓ 강수량은 평년(723.2㎜)과 비슷하겠으며, 여름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일정기간과 지역에 걸쳐 집중호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추진기간 : 2017. 5. 15. ~ 10. 15. (5개월 간)**

❑ **추진방향**

- 호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작동하는 안전대책 수립**
- 틈새없는 사고예방을 위해 **공단과 민간분야간 소통·협업 강화**
- 실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절차와 안전을 중요시하는 단계별 수방근무 세부지침 확립**

● **수방대책** : 재난취약현장 일제 정비, 긴급복구장비 및 복구자재 지원체계 구축 등

● **폭염대책** : 폭염대비 안전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시 폭염대비 안전관리분야 반영의무 등

❑ **중점 추진사항**

수 방 대 책	폭 염 대 책
▸ 사전 수해예방 점검 실시 ▸ 수방 중점관리현장 지정·관리 ▸ 중점관리현장별 세부수방대책 수립 ▸ 긴급복구장비 동원체계 구축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시 폭염대비 안전관리분야 반영 의무 ▸ 공사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 유도 ▸ 폭염특보 발령시 일일상황 보고체계 철저

Ⅱ 분 야 별 추 진 계 획

1 수 방 대 책

가. 공사감독처 비상근무체계 운영

❑ 운영기간 : 2017. 5. 15. ~ 10. 15

❑ 운영대상 : 수방 중점관리 대상 현장 (총 6개 공사)

【1처 : 3개 현장, 2처 : 없음, 3처 : 3개 현장】

※ 대행감독 공사현황 변동에 따라서 대상현장 및 건수 변경 예정

● **중점관리기준** (※ 별첨#1: 공사감독처 수방 중점관리대상 현황)

- 1차 관리대상 : 1단계 발령시, 호우에 따른 침수, 도로파손 등에 영향을 주는 공사
- 2차 관리대상 : 2단계 발령시, 등산로(공원) 비탈면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사

● **관리대상 지정현황**

(4. 18 현재)

구분	계	펌프장 공사	하수공사	하천공사	등산로정비	공원공사
계	6	1	1	2	1	1
1단계	2	1	1	-	-	-
2단계	4	-	-	2	1	1

❑ 운영방식 : 비상근무 조직체계에 따른 단계별 근무

※ 수방 중점관리 대상현장이 없는 부서는 비상근무 미실시

● **비상근무 조직도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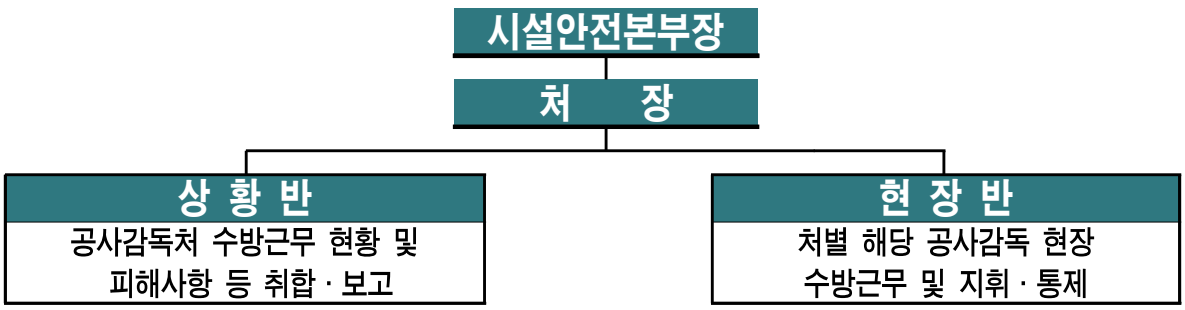

● **근무요령**

상황반	상황실응소	근무현황 작성	현장반 점검결과·취합	상황전파 및 대기
현장반	현장응소	응소확인·보고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현장 비상대기

● 근무교대

06시 전 발령 시	12시 전 발령 시	12시 이후 발령 시
09시 교대	18시 교대	익일 09시 교대

❑ 단계별 근무방법 (※ 별첨#2: 단계별 수방근무 세부지침)

● 도심지 건설현장 안전성 및 기타 재해 관련 단계별 상황근무 강화

단 계	상 황 기 준	비 상 근 무		행 동 요 령
		본사 (상황)	수방관리 대상현장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 6시간 70mm이상 - 12시간 110mm이상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 근무 : 6명【처별 2명】 - 처별 차장 1명 + 과장이하 1명 ✓ 현장상황 2시간 간격 파악(←감독) ✓ 처별상황 취합(2,3처→1처) • 보고체계 ✓ 1처 상황반 → 1처장·본부장 ※ 카톡 또는 구두 보고	• 공사감독 현장근무 • 현장점검 및 이상유무 결과보고	- 시공사 ✓ 현장점검 및 24시간 비상근무 - 감독자 ✓ 현장상주 : 이상유무 (2시간간격)보고 → 상황근무자 및 담당팀장 ※ 카톡 또는 구두 보고 ✓ 비상연락망 점검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 6시간 110mm이상 - 12시간 180mm이상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 태풍경보 - 순간풍속 26m/s - 총강우량 200mm이상	• 근무 : 9명【처별3명】 - 처별 팀장 1명+차장 이하 2명 ✓ 현장상황 1시간 간격 파악(←감독) ✓ 처별상황 취합(2,3처→1처) • 보고체계 ✓ 1처 상황반 → 1처장·본부장 ※ 카톡 또는 구두 보고	• 공사감독 현장근무 • 현장점검 및 이상유무 결과보고 ※ 해당팀장은 2단계 발령 즉시 해당 팀 수방현장 점검 실시 후 이상유무 유선보고 → 상황반	- 시공사 ✓ 현장점검 및 24시간 현장상주 ⇒ 취약지점 집중점검 및 예방작업 - 감독자 ✓ 현장상주 : 이상유무 (1시간간격)보고 → 상황근무자 및 담당팀장 ※ 카톡 또는 구두 보고 ✓ 극단적 상황 시나리오 점검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이재민다수발생	• 근무 ⇒ 전직원 본사 응소 (본부장, 처장 포함) - 수해우려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공단 재대본과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	• 공사감독 현장근무 유지 및 비상근무 시행	- 2단계 운영과 동일하게 유지 - 필요시 본사 직원 지원 ⇒ 인력, 장비 등

※재해 발생시 「공사감독처 재난행동메뉴얼」에 따른 전환 편성 (※ 별첨#3 - 처별 재난행동메뉴얼)

· 처별 상황근무자는 직급분포, 팀장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처별 현장여건을 고려, 공사감독 현장상주 자체판단

· 수방현장 근무자는 공동감독이 교대근무

나. 재난취약현장 일제 정비

❑ 세부 수방대책 수립 및 사전 수해예방점검 실시

- 세부 수방대책 수립
  - 旣 수립된 극단적 시나리오에 재해발생 상황 추가·보완 수립 실시 (5. 12限)
- 점검기간 : 2017. 5. 8(월) ~ 2017. 5. 12(금)
- 점검대상 : 점검기간 중 수방 중점관리 대상현장 포함 전 공사
- 점검사항 : 중점관리 대상현장 수방대책 수립여부, 「수방대비 사전 점검표」에 따른 수해취약 대상 점검, 수방자재 관리 상태 등 전반(※ 별첨#4 - 사전점검표)
- 점검결과 : 팀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후 처별 취합·제출
  (⇒ 공사감독 1처, 5. 15限)

다. 긴급복구 장비 동원체계

❑ 권역별 긴급복구 장비 동원체계 구축

- 지원규모 : 굴삭기 6대, 덤프 5대
- 운용방법 (※ 별첨#5,6 - 수방시 공사감독처 장비지원업체 현황, 공단사업장 보유 장비현황)

공사감독처 재해 발생시	공단내 혹은 타기관 피해발생시
본부 상황반에서 복구장비지원 업무 수행	공단 재대본에서 복구장비 지원업무 수행

2 폭염 대책

❑ 운영기간 : 2017. 6 ~ 9월

❑ 운영대상 : 운영기간동안 진행 중인 전 공사

❑ 운영방식 : 폭염특보 발령 기준으로 평상시·특보 발생시로 구분 운영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예상
✓ 폭염 경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예상

평상시 운영체계

점 검 사 항	점 검 자
현장별 위험성평가 시 폭염대비 안전관리분야 반영 여부 점검	해당 팀장
현장조직도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담당 감독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 요령 등 현장비치 (※ 별첨#7 -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 요령)	담당 감독
매일 작업시간 전 폭염대비 자체 교육(TBM 실시)	담당 감독
음용시설 및 휴식공간 확보 등 근로여건	담당 감독

특보발생시 운영체계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및 구조활동 파악
- 평상시 운영체계를 포함한 현장별 폭염관리 점검 강화 등

- 임시상황반 조직도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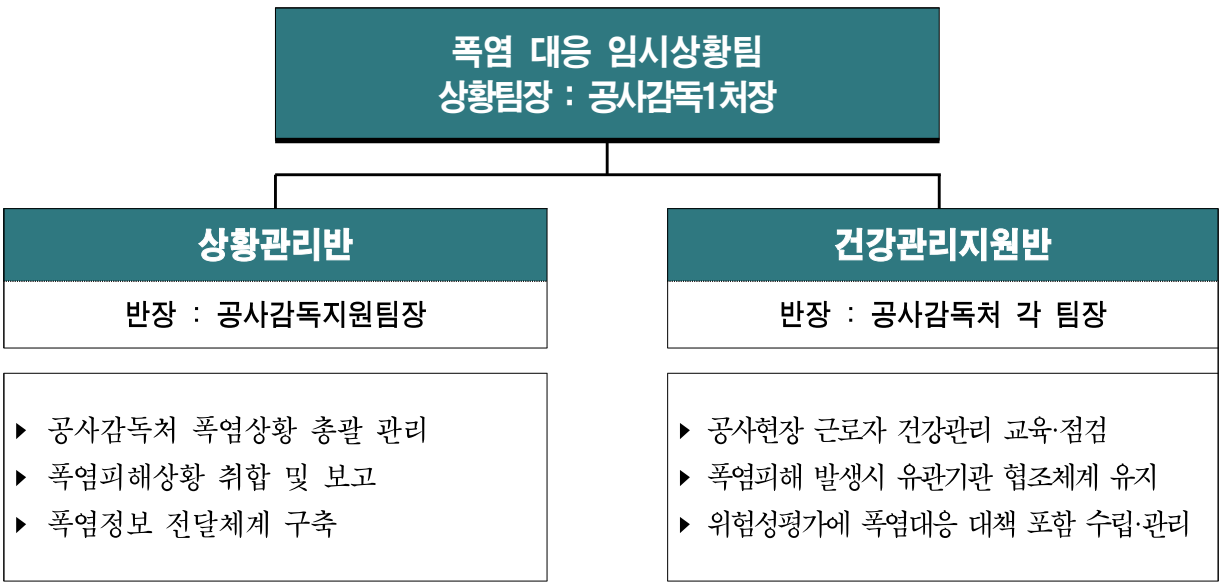

Ⅲ 행 정 사 항

- 공사감독처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계획 시행 알림 (⇒ 공사감독 2·3처)
- 폭염대책 추진 및 각 현장 홍보(~9월말)
- 수방기간 중 수방 중점관리 대상 현장 변경 시 내용통보 철저 (⇒ 공사감독 1처)

따로붙임 : 1. 공사감독처 수방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2. 단계별 수방근무 세부지침 1부
3. 공사감독처 재난 행동메뉴얼 1부
4. 수방대비 사전 점검표 1부
5. 공사감독처 장비지원업체 연락망 1부
6. 공단사업장 보유 장비(자재) 현황 1부
7.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및 폭염질환 응급처치 요령 1부
8. 상황일지 등 보고양식 1부
9. 수방근무자 명단 1부
10. 재해대책비 지급기준 1부. 끝.